인도 상공부
상무부서 무역국
2020년 3월 28일

무역 고시

주제 : 인도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소급 발급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인도정부의 봉쇄정책(lockdown/curfew)으로 인하여 절차편람 2015-2020 (Handbook of Procedure)의 2.103항에 따라 인도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포괄적경제협력(CECA), 특혜무역협정(P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발급당국이 일시적으로 폐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증명서는 인도의 관련당국이 재개한 후에 소급하여 발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기간 동안 인도가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들의 세관 및 기타 권한있는 당국에서는 인도 수출업자에 의한 사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소급원칙에 따라 특혜자격이 있는 수입에 대하여 친히 허용해주시길 바랍니다.

3. 인도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각 정부의 공식적 요청 또는 공지가 있는 경우 특혜 무역 협정하의 인도 내 수입을 언제라도 인정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본 고시는 권한 당국의 승인을 받아 발행되었습니다.